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6. 10. 28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6년 10월 14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6년 10월 1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07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(2016년 10월 28일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기획예산과장 이준범

### 가. 제안이유

상위법인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규정된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○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제5조)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 까지로 정함

### **3. 검토보고 (김은모 전문위원)**

-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설치하는 특정한 자금으로, 우리 구에서는 2006. 5. 18. 제정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에 따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통합관리로 그 간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저축수단에 기금을 예치함으로써 마포구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어 기금 사용부서에서 사업 기간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고 그 밖에 기금은 향후에도 통합관리 기금 담당부서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 또한 동(同)조례 부칙에서 시행일을 종전 2012. 1. 1.일부터를 2017. 1. 1.일부터 시행한다. 로 변경하고 2016. 12. 31.일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. 1. 1.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없음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**

**8. 기타사항 : 없음**